

[사 건 명] 행심 2018 - 8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을 취  
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2018. 10. 30. 발생한 피해학  
생 ○○○에 관한 학교폭력에 대해 2018. 11. 12.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함)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  
은 2018. 11. 1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  
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함)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12.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목을 잡아당기며 교실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청구인이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피해학생을 때리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목을 두 손으로 졸라 상처를 입혔고, 이에 청구인이 발로 피해학생의 배를 차며 저항하였다. 이때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비강내 뼈가 골절되었다.
- 나. 이 사건은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시작되었고, 청구인의 가해행동의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동밖에 없다.
- 다. 처음부터 시비 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등한 싸움도 아니며, 청구인이 발버둥치지 않았다면 끌려가서 맞았거나 계속 목을 졸렸을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동을 가해행위로 판단한 사실인정 오류의 위법이 있다.
-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마. 일부 가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피해는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행위(청구인이 헤드록을 빠져 나온 후 피해학생에 대해 가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서 선도 조치 혹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서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려 사항이다.
- 나. 피청구인은 쌍방폭행으로 사안을 접수하여 양측에 각각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결정할 당시 ‘지속성’ 부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역시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1항 및 대법원 관례(대법원 1971.4.30.선고 71도527 판결, 1993.8.24.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를 참고하여 청구인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폭력을 행사하였기 보다는 헤드록을 빠져 나온 이후 피해학생의 얼굴과 배를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역

시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라.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성 낮음’, ‘지속성 없음’, ‘고의성 낮음’, ‘반성정도 보통’, ‘화해정도 낮음’으로 판단하여 총 7점으로 ‘4호 사회봉사’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선도 가능성이 있고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하였다.

마. 학폭위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된 피해, 가해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 측의 구술심리결과(청구인 측은 출석하지 않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10. 28. 같은 반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청구인은 ‘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용용 죽겠지’ 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학생은 ‘노잼인데 그만하지’라고 문자를 보냈고, 청구인이 ‘반성문을 영어로(해석해봐!)’, ‘글로벌’ 이란 문자를 다시 보냄.

나. 다음날인 10. 29. 같은 채팅방에서 청구인이 ‘김치 담그는 법’ 사이트 주소를 연결해 보냈고, 이를 본 피해학생이 ‘어제도 말했지 작작하라면 작작해’라고 문자를 보냄. 이에 대해 청구인이 ‘모가?’라며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보내자, 피해학생은 ‘내가 우습냐? ㅋㅋ’, ‘넌 학교에서 보자’라고 문자를 보냄.

다. 2018.10.30. 2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이야기하자며 청구인의 팔짱을 끼고 팔로 머리를 감싸며 교실 뒤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청구인은 하지 말라고 하며 한 번 뺏으나 피해학생이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손과 발로 피해학생의 머리와 배를 때림. 그러자 피해학생이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려 청구인의 비강내 뼈가 골절됨.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해학생 진술 및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학생의견서)을 통해 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의 머리와 배를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속칭 헤드락에서 풀려난 뒤 피해학생이 다시 헤드락을 하려고 하자 피해학생의 머리와 배를 때린 것으로(목격학생 중 한명은 “약 20초 동안 6대 넘게 구타함. 그동안 ○○○은 사물함에 약간 부딪히기도 했음. 내가 본 걸로는 머리 2대, 배 1대, 어깨랑 다리를 2~3 정도 때렸음” 이라고 진술) 목이 졸린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 즉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총점 7점으로 4호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하나 선도가능성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3호 학교에서의 교내봉사 4시간으로 경감 처분하였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이전에는 피해학생에게 맞대응한 적이 없음을 들어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학생의 머리와 배를 때린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심각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낮음으로 판단하였으며, 한 대 이상 폭행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낮다고 판단하였는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반성정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아 보통으로 판단하였고, 화해정도에 대해서는 화해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 모두 동일하게 낮음으로 판단하였는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피청구인은 쌍방폭행으로 사안을 접수하여 양측 모두에 대해 처분 조치하면서 사건 경위(피해학생이 유발), 결과 발생의 중대성(청구인은 비골내골절상을 입음)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처분하였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6시간』 처분 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였는바,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 다. 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